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8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0.

발 의 자 : 김 현 · 최민희 · 전용기
이주희 · 장종태 · 김남근
이정현 · 허성무 · 김 윤
김우영 · 조인철 · 이병진
황정아 · 정일영 · 한민수
박지원 · 노종면 · 이광희
문금주 · 최혁진 의원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,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최근 SK텔레콤은 홈 가입자 서버(HSS)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 유심 정보 등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 이후, 피해자들에 대한 유심 무상 교체나 위약금 면제와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. 이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, 사업자의 자율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체계의 한계

에서 비롯된 문제점으로 보임.

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,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,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,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국민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32조).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까지에”를 “제7항까지에”로, “지급절차”를 “지급절차, 이용자 보호조치의 세부기준·절차”로 한다.

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침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,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용자 보호 조치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이용자 보호) ①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2조(이용자 보호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 역무에 관하여 침해사고 등으 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,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 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
⑦ 제2항부터 <u>제6항까지</u> 에 따 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·기준·절차, 평가 결과 활용, 계약서 사본 송부 절차, 보증보험의 가입·갱신 및 보 험금의 <u>지급절차</u>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⑧ -----제7항까지에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지급절차, 이용자 보호조치의</u> <u>세부기준·절차</u> ----- ----- -----.